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보

http://www.seo.incheon.kr/

선람	기관의장		제1900호 2025. 2. 3.(월)

차 례

고 시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——————1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5호 인천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 ——————2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 **편집 : 홍보정책과 [032-560-4144]**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5-18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2. 3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 도로명주소: 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(도로명주소)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청라동 157-7, 157-8	청라커낼로288번길 8-18 (청라동)	2012. 3. 30. (2025. 2. 3.)	청라커낼로의 시작점에서 2,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5. 2. 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-195호

인천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‘인천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’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2. 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**공람기간**: 2025. 2. 3. ~ 2025. 2. 17. (14일간)
2. **공람장소**: 서구청 주택과(서구 서곶로 323, 3층),
   인천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
   (서구 서달로137번길 10, 2층)
3. **공람내용**: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
4. **의견제출**: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5. **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**
   (1) **사 업 명 칭**: 인천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   (2) **위 치**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3번지 일원
   (3) **구 역 면 적**: 5,318.6㎡
   (4) **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**: 미정
   (5) **조 합 원 수**: 190명
   (6) **사업시행자**: 인천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종하)

(7) **변 경 내 용**: 조합원 권리변동 및 조합정관 변경, 조합사무실 변경,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

6.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건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, 공람 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본 공고 내용은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.